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3.07.31]

한국투자 K-뉴딜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펀드코드 : 72712]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신탁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되는 **주식가격 하락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반도체, 제약 및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 등과 같은 특정 테마 및 산업에 한정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중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국투자 K-뉴딜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p>1. 투자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 <p>◇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p> <p>☞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p> <p>■ 한국투자 K-뉴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p>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p> <p>2. 투자전략</p> <p>◇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p> <p>■ 한국투자 K-뉴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부분의 투자는 60% 이상으로 하면서 주식부문에서는 뉴딜 정책에 부합하고 정부 정책에 수혜가 예상되는 성장산업 내에서 기업 본연의 경쟁력과 지배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업종 대표주에 집중투자하고, 채권부문에서는 국고채, 통안채 위주로 투자하는 한국투자 K-뉴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60% 이상 투자할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증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 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 시 (단위:천원)				
		선취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비용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 선취- 오프라인 (A)	납입금 액의 1.0% 이내	1.5190	0.8100	1.3700	1.5218	254	413	576	921
수수료 미징구-	없음	2.2090	1.5000	1.5800	2.2090	226	446	658	1,060	2,145	

오프라인-보수체감(C1)										
수수료 선취- 온라인 (A-e)	납입금 액의 0.5% 이내	1.1140	0.4050	1.0100	1.1159	164	281	404	662	1,401
수수료 미징구- 온라인 (C-e)	없음	1.3340	0.6250	1.1900	1.3367	137	279	426	737	1,617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판매 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종류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1년 단위로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가정하여 총보수·비용을 산출합니다.
- (주2) **종류A와 종류C1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A-e와 종류C-e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45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주5) 합성 총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6)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종류C2, C3, C4, C5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하며, 그 적용기준 및 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 **[요약정보] 중 전환절차 및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2.08.01~ 2023.07.31	2021.08.01~ 2023.07.31	2020.08.01~ 2023.07.31	2018.08.01~ 2023.07.31	
수수료미징구(C1)	2008.03.10	-	-4.46	-24.92	-7.57	-4.06	1.32
비교지수	-	-	-	-	-	-	-
수익률 변동성	1999.06.23	-	17.16	19.25	20.34	21.05	21.50

(주1) 비교지수(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최초설정일 ~ 2021.01.27 : [(KOSPI × 90%) + (CD금리 × 10%)]
2021.01.28 ~ 현재 : 해당사항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투자신탁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투자신탁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 자기구 수(개)	운용 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수민	1980	책임 (수석)	14	4,368	5.47	-	6.69	0.47	10년 3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

	<p>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신탁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설정된 뉴딜펀드가 아니므로 세제혜택 등 뉴딜 정책의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펀드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구성종목에는 정부의 뉴딜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구 분</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원본손실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주식가격 하락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포트폴리오 집중 위험</td><td>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반도체, 제약 및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 등과 같은 특정 테마 및 산업에 한정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정부의 뉴딜 정책 관련주와의 투자 괴리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 정책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대표주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나 이러한 전략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 정책 관련 종목, 업종, 산업 등과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종목, 업종, 산업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딜 정책 관련 종목의 성과와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공모주 투자위험</td><td>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는데</td></tr> </tbody> </tabl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반도체, 제약 및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 등과 같은 특정 테마 및 산업에 한정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뉴딜 정책 관련주와의 투자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 정책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대표주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나 이러한 전략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 정책 관련 종목, 업종, 산업 등과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종목, 업종, 산업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딜 정책 관련 종목의 성과와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는데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반도체, 제약 및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 등과 같은 특정 테마 및 산업에 한정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뉴딜 정책 관련주와의 투자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 정책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대표주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나 이러한 전략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 정책 관련 종목, 업종, 산업 등과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종목, 업종, 산업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딜 정책 관련 종목의 성과와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증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 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액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p>환매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격	<p>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p>공시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과세의 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기구</td> <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 </tr> <tr> <td>수익자</td> <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td> </tr> <tr> <td>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td> <td>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관련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td> </tr> <tr> <td>퇴직연금제도의 세제</td> <td>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td> </tr> </tbody> </table>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관련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관련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종류C1 수익증권 → 종류C2 수익증권 2.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종류C2 수익증권 → 종류C3 수익증권 3.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종류C3 수익증권 → 종류C4 수익증권 4.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종류C4 수익증권 → 종류C5 수익증권 -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전환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당해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가능 																													
집합투자 업자	한국투자신탁운용(주) (대표번호 : 02-2055-5555 / 인터넷 홈페이지 : kim.koreainvestmen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 매출 총액	10조좌																											
효력 발생일	2024년 2월 15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69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p>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 -판매경로-기타 편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d9e1f2;">종류(Class)</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d9e1f2;">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padding: 10px;">판매 수수료</td> <td style="padding: 10px;"> 수수료 선취(A) </td> <td colspan="2" style="padding: 10px;"> 집합투자증권 매입 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td> </tr> <tr> <td style="padding: 10px;"> 수수료 후취 </td> <td colspan="2" style="padding: 10px;">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td> </tr> <tr> <td style="padding: 10px;"> 수수료 미징구 (C) </td> <td colspan="2" style="padding: 10px;">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 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td> </tr> <tr>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padding: 10px;">판매 경로</td> <td style="padding: 10px;"> 온라인 (e) </td> <td colspan="2" style="padding: 10px;">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td> </tr> <tr> <td style="padding: 10px;"> 오프 라인 </td> <td colspan="2" style="padding: 10px;">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td> </tr> <tr> <td style="padding: 10px;"> 직판 </td> <td colspan="2" style="padding: 10px;">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판매하며 다른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td> </tr> <tr> <td style="padding: 10px;"> 온라인 슈퍼(S) </td> <td colspan="2" style="padding: 10px;">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td> </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 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 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 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직판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판매하며 다른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 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 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 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직판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판매하며 다른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 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관 (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 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 연금(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m.koreainvestmen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m.koreainvestment.com)

